

제22차 중서부태평양수산위원회(WCPFC)

연례회의 참석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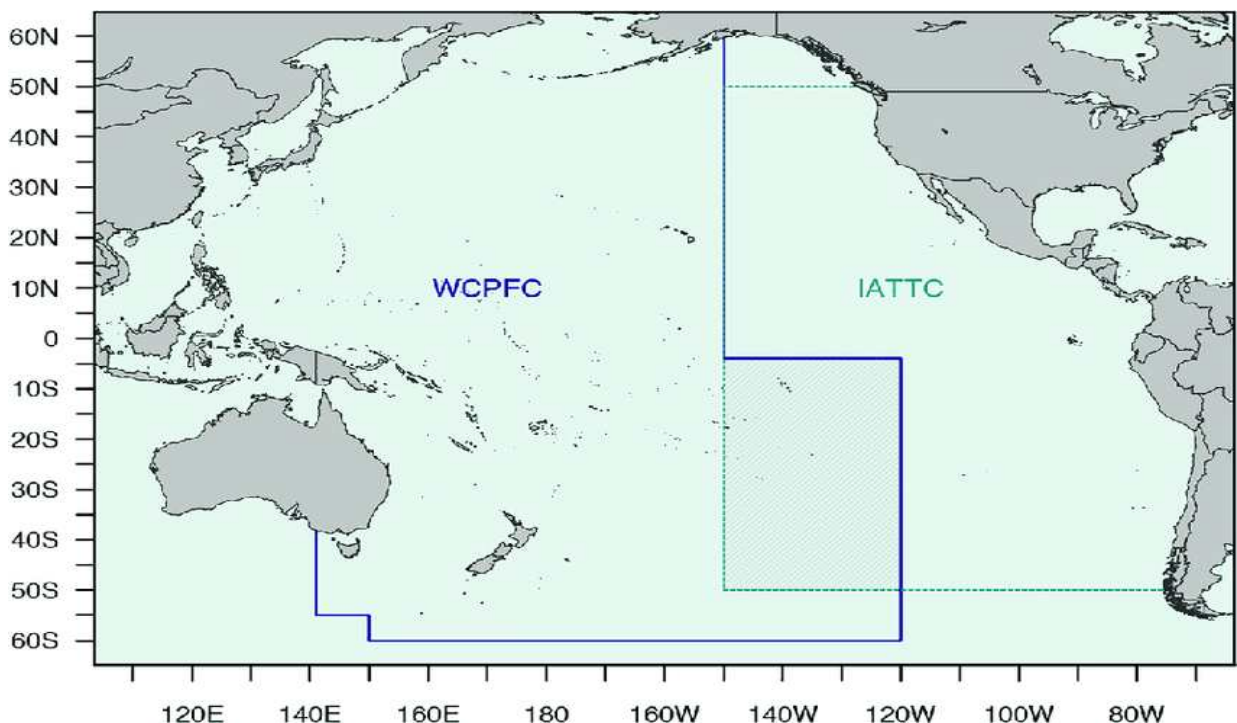
I. 개요

- (일시/장소) '25.11.30(일)~12.5(금) / 필리핀 마닐라
- (참석자) 한국, 일본, 중국, 대만, 미국, 캐나다, 인도네시아, FFA 등
 - * (한국대표단) 해양수산부 송종준 국제협력총괄과장(수석대표), 김정례 사무관, 나일강 주무관, 원양산업과, 국립수산과학원, 동해어업관리단 조업감시센터, 주피지 대사관, 원양협회, 원양선사, 운반선사, 협력센터 양재걸 전문관

II. WCPFC* 개요

* Western and Central Pacific Fisheries Commission

- 협약 발효 / 한국 가입 : '04.6.19 / '04.11.25
- 회원국(26) : 한국, 호주, 중국, 캐나다, 쿡 제도, EU, 미크로네시아, 피지, 프랑스, 인니, 일본, 키리바시, 마셜, 나우루, 뉴질랜드, 니우에, 팔라우, PNG, 필리핀, 사모아, 솔로몬, 대만, 통가, 투발루, 미국, 바누아투
- 관리어종 : 꽁치를 제외한 중서부태평양 수역의 고도회유성 어종
- 대상수역 : 중서부 태평양 수역



Ⅲ. 주요내용

□ 수확 전략

1. 남방 날개다랑어

- 금년 2차례 회기간 관리워크숍에서 주요쟁점 사항들*이 논의되었음

* 관리절차 적용 범위, 향후 총허용어획량(TAC) 수준, 관리절차 이행 조치 등

- 회기간 관리워크숍에서와 마찬가지로 남방 날개다랑어 조업 회원인 일본, 중국, 대만은 적용 범위를 자원이 회유하는 전 범위로 할 것을 주장하였고, 보다 높은 TAC를 도출하는 어획통제규칙(HCR) 10을 지지하였음. 이들은 급격한 TAC 감축이 현재 어업에 의존하는 어민들의 생계에 미치는 영향을 우려하였음

- 일본은 할당을 미소진하는 회원들이 있을 것이므로 예상보다 어획량이 적을 가능성이 높고 HCR 7은 현재 눈다랑어에 적용하고 있는 기준점과 비교하면 사전예방적이지 않다고 할 수 없다고 하였음

- FFA는 관리절차 적용 범위에 적도~남위10도 해역과 토켈라루, 투발루 EEZ를 제외할 것을 주장하였고, 낮은 TAC를 도출하는 HCR 7을 지지하였음. 이들은 높은 TAC가 장기적으로 자원에 미칠 부정적 영향, 시장공급량 과다로 인한 어가 하락을 우려하였음

- 본 기구 관리절차로 통제되지 않는 동부태평양(EPO)에서의 어획량 이슈가 제기되었고 동 해역 최대조업국인 중국은 보다 높은 수준의 EPO 어획량 가정을 주장하였고 다른 회원들은 모두 이에 부정적이었음

- 회의 마지막 날 조업 회원들의 양보로 FFA 제안*으로 합의되었음

* 주요내용: 관리절차 적용 범위에 적도~남위10도 및 토켈라우와 투발루 해역은 제외, TAC 약 5.6만톤, 관리절차 주기 3년, 주기 간 최대변동폭: +10%, -5%

- FFA가 관리절차 제안서와 함께 제출한 이행 제안서*는 시간 부족으로 내년 회기간 작업반을 통해서 논의하기로 하였음

* 주요쟁점: 공해와 EEZ 간 할당 비율, 회원별 할당, 전배, 이월, 옵서버, 어획물 폐기

남방 날개다랑어 관리절차 보존관리조치(안) (FFA)

○ 배경

- SPC 과학 작업 및 관리자 관리워크숍(2회) 논의를 토대로 FFA는 남방 날개다랑어 관리절차를 수립하는 보존관리조치 제안서를 제출

○ 관리절차 목적

- 남방 날개다랑어 자원을 ① 목표기준점* 이상으로 유지 ② 한계기준점 하회할 가능성을 20% 미만으로 유지 ③ 관리주기 간 어획 수준을 안정적으로 유지

* 2017-19년 기간 중 산란 잠재력 고갈도(spawning potential ratio)의 96% 수준

○ 관리절차 적용 범위

- 남위 10도 이남 협약수역에 적용하고 토켈라우와 투발루 EEZ는 제외
- 본 보존관리조치에서 관리절차 적용 범위 내 총어획량을 규정하고 이행에 관한 세부 사항은 별도 보존관리조치에서 규정

○ 관리절차 주요 요소

- 어획통제규칙(부록 I), 추정 방법(부록 II), 데이터 요구사항 및 감시 전략(부록 III), 비상 상황 절차 (부록 IV)

○ 관리절차 검토

- 검토 주기: 매 3년 마다 관리절차 성과를 검토하고 개정 고려

**남방 날개다랑어 관리절차
이행을 위한 보존관리조치(안) (FFA)**

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남방 날개다랑어 관리절차 이행을 위한 세부 사항 규정
적용 범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남위 10도 이남 협약수역 내 모든 연승 및 트롤 어업에 적용하고 토켈라우와 투발루 EEZ는 제외 자국 영해와 군도수역에서 본 CMM과 양립가능한 조치 취할 것이 장려
할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25-XX에 의해 도출된 TAC를 EEZ에 XX%, 공해에 XX% 할당 2026년에 회원별 할당을 채택하고 이때 협약 10조 3항 및 30조를 고려
전배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 CCM의 공해와 EEZ 한도 간 또는 한 CCM 또는 소지역 그룹의 EEZ 한도 간 전배만 허용. 단, SIDS는 공해 한도 전배 가능 당해 연도 내 전배 및 남위 10도 이남에서만 전배 허용 본 보존관리조치 발효 후 3년 동안은 전배 금지
이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회원 또는 소지역 그룹은 관리주기(3년) 내에서 3년 합산 한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1차 및 2차 연도에 20%까지 이월 가능 항차 종료 또는 남반구 퇴역 후 30일 내 조업 및 노력 데이터 제출 모든 전자적 하역 데이터를 제출하고 요약본을 매년 4.30까지 제출. 사무국은 이에 관한 표준 및 절차를 개발하여 26년에 위원회가 채택 데이터 및 보고 요구사항 미준수시 이월 불가능 및 초과어획 반납
옵서버	<ul style="list-style-type: none"> 27.1.1부터 사람 옵서버 10% 이상 달성 30.1.1부터 사람 옵서버 또는 EM으로 30% 이상 달성(사람 최소 10%)
전자 보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30.1.1부터 ROP 옵서버에 의한 전자 보고 100% 실시
어획물 폐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선상 모든 남방 날개다랑어, 황다랑어 및 눈다랑어를 하역 전까지 보유 폐기 허용: ① 어창이 완전히 찼을 때, 선박에서 즉시 생존방류를 시도하였고, 선상 어획물이 양륙 또는 전재되기 전까지 추가 조업이 없을 때 ② 어획물이 피식되었거나 기타 사유로 인간 소비로 부적합할 때 모든 폐기는 완료 후 72시간 이내 위원회에 보고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무국은 한도, 전배, 이월을 감시하는 시스템을 웹사이트에 개발하고 위원회는 이를 위한 자원을 제공 발효는 2027.1.1.에 되고, 10항에 명시된 회원별 할당을 채택할 때까지 현행 조치(2015-02)가 계속 적용

2. 가다랑어

- 호주는 과학 작업 및 위원회 검토가 이루어지기 용이하도록 위원회 관리어종들의 관리절차 주기를 맞추기 위한 제안서를 제출하였음
- 호주 제안서대로 합의되어 현재 가다랑어 관리절차 검토 시점을 '26년이 아닌 '27년에 하기로 하고 열대다랑어 조치(2023-01) 검토 및 개정 시점을 '26년이 아닌 '27년에 하기로 하였음

3. 눈다랑어

(1) MP 통제 범위: FAD 금어기 포함 여부

- '25년 또는 '26년 총회에서 눈다랑어 MP를 채택하기로 되어 있었으나 위원회는 금년에는 채택하기 어려움을 인식하였고 '26년 채택을 위한 작업을 계속하기로 하였음
- 회원들은 눈다랑어 MP가 통제하는 범위에 대해 이견을 보였음. FFA는 FAD 금어기는 제외해야 하고, MP 밖에서 민감성 분석을 수행해야 한다고 하였음. FAD 금어기를 포함하는 MP는 절대 수용하지 않을 것임을 표명하였음
- 일본, 미국, 중국, 대만, 한국, EU 다른 회원들은 연승만 통제할 경우 전체 눈다랑어 어획량의 27%만 통제하는 MP가 될 것이라고 하고 FAD 금어기도 통제 범위에 포함시켜야 하고 SSP가 포함시키는 옵션도 작업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수용되었음

(2) SSP에 대한 작업 지침

- SSP가 25년 총회에서 합의된 3개 목표기준점(TRP) 옵션들*에 대해 평가하고 비교 성과를 26년 총회에 제공할 것을 요청하였음

【눈다랑어 목표기준점 후보】

- ① 2012-2015년 산란자원량 평균 고갈율 (현재 34%SBF=0로 추정)
- ② 2012-2015년 산란자원량 평균 고갈율*0.94 (현재 32%SBF=0로 추정)
- ③ 2012-2015년 산란자원량 평균 고갈율*1.06 (현재 36%SBF=0로 추정)

- 위원회는 추가적으로 예비관리절차 작업에 관하여 다음 지침을 SSP에 제공하였음:
 - 관리절차 주기를 3년으로 하고 데이터는 2년 전까지 반영
 - 상이한 수준의 FAD 금어기(0~3개월) 및 연승 어획/노력량 하에서 동일한 TRP를 달성하기 위한 HCR 설계 및 평가
 - 관리주기 간 TAC 변동폭 제한 유무에 따른 HCR 설계 및 평가
 - 관리절차 통제 밖에 있는 고정된 값으로 추정하는 어획량에 대한 평가
 - 기구 관할 밖에 있는 인도네시아, 필리핀, 베트남 군도수역 내 어획량 관련 불확실성을 다루기 위한 민감성 분석 수행

(3) 향후 계획

- '26년에 눈다랑어 MP 채택을 위한 관리워크숍(화상)을 수차례 개최하기로 하였음. 첫째 회의는 과학위(8.11~19) 전에 개최하고 두 번째 회의는 과학위 후 기술이행위(9.23~29) 전에 개최하고 필요시 추가 회의들을 개최하기로 하였음

4. 황다랑어

- 위원회는 눈다랑어부터 황다랑어 순차적인 접근을하기로 하였음을 확인하고 눈다랑어를 위해 개발된 동일한 성과지표들을 사용하기로 하였음

□ 어류군집장치(FAD) 관리옵션 작업반

○ 배경

- FAD 관리조치 개선을 논의하기 위한 FAD 관리옵션 작업반이 금년 회기간 논의를 진행하였음
- 위원회는 FAD 관련 활동에 관여하는 것이 허용되는 선박 유형 및 협력적 비회원들의 FAD 관련 활동 참여에 관한 모호성을 명확히 할 것을 작업반에 요청하였음

○ 결과

- 위원회는 FAD 작업반 논의결과를 수용하였고 미결 쟁점들에 대해서는 작업반이 '26년에 계속 논의할 것을 요청하였음

구분	주요내용
합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성 부이 데이터 전송을 위한 데이터 기록 양식 • 협력적 비회원인 파나마 공급선에 대한 FAD 관련 활동 금지가 다른 모든 협력적 비회원들에게 동일하게 적용 • FAD 관련 활동에 관여하기 위해서는 100% 오피서버 커버리지, 전자 보고, VMS 추적 등 감시 및 보고 사항이 적용 • FAD 투척 및 공급 활동과 FAD 회수 활동의 구분이 필요하고 FAD 회수 활동은 모든 선박에 허용 • 항구에서 FAD 재료를 공급받는 것은 FAD 공급 활동에 해당하지 않음
미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FAD 관련 활동에 관여할 수 있는 선박 유형 • FAD 회수 등 특정 사건 발생 시 보고 기한 • FAD 로그북 내 보고 요구사항 간소화 작업 • FAD 부이 활성화 관련 보존관리조치 2023-01 21항*의 명확한 해석 또는 개정 필요성 <p>* "FAD 부이는 선내에서만 활성화되어야 한다."</p> <p>→ 부이가 물리적으로 어선 내에서만 활성화되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으나, 현실에서는 육지의 부이 공급자에 의해 또는 해상 원거리에서 활성화되기도 함</p>

□ 연승 눈다랑어 어획한도와 전자감시(EM)

○ 배경

- 열대다랑어 조치(2023-01)에서는 옵서버 커버리지(사람 또는 EM)를 5%에서 10%까지 상향할 경우 연승 눈다랑어 어획한도를 5%p까지 증가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음
- 현재 전자감시 임시 최소기준은 마련(24)되었으나 보존관리조치가 채택되어 있지 않아 EM을 사용한 옵서버 커버리지 이행을 평가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태

○ 논의내용 및 결과

- EU는 EM을 사용하여 커버리지를 달성하고자 할 경우가 있다면 사전 데이터 제출 계획을 설명해야 하고 EM으로 수집한 데이터 제출이 실제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하였음
- 대만은 EU 제안은 EM을 사용하는 경우에만 적용되고 대만과 같이 사람으로 하는 경우에는 이미 하고 있으므로 불필요하다고 하였음
- FFA는 EM 조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는 옵서버 커버리지를 사람으로만 달성해야 한다고 하였음
- 한국은 EM을 사용하여 커버리지를 달성하고자 할 경우 위원회 인증을 받은 EM을 의미함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하였음
- 중국은 현재 열대다랑어 조치에서는 사람 또는 EM으로 달성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으므로 EM으로 수집한 데이터도 제출할 수 있고 이것이 커버리지 달성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하였음
- 일본은 중국에 동의하였고 25년에 중국이 EM으로 커버리지를 달성했다면 조치 불이행으로 평가되어서는 안된다고 하였음
- 한국 의견대로 위원회 인증받은 EM이 되어야 하는 조건은 26년부터 적용하고 25년에는 적용되지 않기로 하였음
- 사무국은 현재까지 EM을 사용하여 커버리지 증가를 하겠다고 의사 표명한 회원은 없었다고 하였음

□ 인도네시아 선망 공해 조업일수 조정

○ 논의배경

- 인도네시아는 선망 공해 조업일수 500일을 요청하는 제안서를 제출 하였음*

* 인도네시아 주장 주요 근거:

- 1) 2008년 노력 제한 데이터에 관한 과학위 문서에서 인니 공해 선망 조업일수 약 500일이 인정되었음
- 2) 2016년 사무국과 인니 간 공식 서신으로 인니 선망 선단 개발에 관해 위원회 승인이 불필요함이 확인되었음
- 3) 인니는 신조선 건조 지연으로 공해 선망 조업에 지금까지 참여하지 않았으나 이제는 권리 행사하기를 원함

CCM	조업일수
미국	1270
인도네시아	(0) 500
EU	403
한국	207
뉴질랜드	160
일본	121
대만	95
중국	26
필리핀	#
에콰도르	**
엘살바도르	**

○ 논의결과

- CCM들은 열대다랑어 조치 개정 시점('26년)이 아님에도 조치 개정 논의하는 것에 반대하여 제안서는 논의되지 않음

□ 해상 전재

○ 논의배경

- 금년 기술이행위원회에 이어 FFA와 한국은 해상 전재에 관한 제안서를 제출하였음

구분	제안서 주요내용
FFA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0년에 발효한 현행 조치는 해상 전재가 경제적 어려움 및 조업 관행 변경을 야기함을 입증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조치 발효 당시 존재하지 않았던 선박(2010년 이후 건조된 선박)은 본 예외가 적용되지 않고 위원회 승인 없이는 해상 전재가 금지되어야 함 • 협력적 비회원의 참여 권리 중 운반선으로 전재에 관여하는 것은 항구에서만 허용되고 해상에서는 금지되어야 함 • 사무국은 연도별로 해상 전재에 참여한 선박목록을 웹사이트에 게시하고 새로운 정보가 가용할 때마다 정기적으로 업데이트
한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재에 관한 FAO 자발적 지침에서는 견고한 MCS 하에서 이루어지는 해상 전재를 정당한 활동으로 인정하고 있음 • 해상 전재는 조업 효율성 제고, 상품 품질 유지, 선박 안전을 위한 활동으로, 여러 RFMO들에서 널리 인정되고 있음 • 해상 전재는 그 자체로 IUU 위험을 야기하지 않고 조치 불이행과 약한 감시가 IUU 위험을 야기함 • 해상 전재시 하역 및 수취 선박의 보고에 책임을 가진 CCM들은 다음 추가적인 안전장치를 보장해야 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i) 협약수역 내 해상 전재에 관여하는 수취 (운반) 선박은 VMS를 구비하고 요청이 있을 경우 사무국에 데이터를 제공; (ii) 선박은 기국으로부터 전재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하고, 하역 및 수취 선박 정보, 전재되는 어종 및 양, 예상 일자 및 위치 등 보고 필요; (iii) 기국은 전재하는 자국선 활동을 24시간 7일 감시하고 자국선, 관련 당국, 사무국과 통신할 수 있는 조업감시센터를 유지; (iv) 전자보고를 포함하여, 해상 전재에 관한 사전 통보 및 사후 신고 정보에 대해 승인된 검색관들의 접근이 허용되어야 함.

○ 논의내용

- 회원들은 이전과 동일한 입장들을 표명하였음

구분	주요의견
한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항 전제하면 조업 경제성 확보 불가능 • 선박 건조 시점과 조업 형태를 연결하는 것은 부적절 • 기국별로 해상 전제를 모니터링하는 정도가 다른 점 고려 필요
일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 해역 내 운반선에는 보통 2명의 옵서버(IATTC, 연안국)가 승선하여 해상 전제를 모니터링하고 있음 • 일본은 해상 전제 불가피성을 입증하는 문서를 제출했음 • 09년 이후 일본은 해상 전제 건수를 줄이고 있고 이러한 노력도 고려 필요
대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승 어업은 이미 경제적으로 한계에 봉착했고 해상 전제는 그것을 더욱 악화시킬 것 • 협력적 비회원들의 자발적인 노력(해상 전제 참여 대가로 납부하는 기여금)으로 SIDS의 부담이 줄어든 점을 고려 필요
FFA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상 전제는 협약상 금지되고 있음 • 해상 전제는 근본적으로 모니터링이 어려워 IUU 주요 창구가 될 우려 • 해상 전제 데이터 보고는 취약함. 조업일지 데이터와 간극이 30~50%임. 여기에 IUU 발생 가능성이 있음
EU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 제안서는 전제 조치 강화에 불충분하므로 FFA 제안서 지지
Sharks Pacific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상 전제는 위원회 감시 제도 중 가장 취약한 부분 • 확인되지 않은 이전들이 있고 데이터가 취약함. 마약 밀매가 일어나고 노동착취의 창구임 • 경제적 불가피성에 대한 어떠한 자료도 제출된 적이 없음 • 운반선 옵서버는 자국 사람인 경우가 많고 직접 선사로부터 급여를 받아 독립성이 취약함

○ 논의결과

- 연도별로 해상 전제에 참여한 선박목록을 웹사이트에 게시하고 새로운 정보가 가용할 때마다 정기적으로 업데이트하기로 함(FFA 제안)
- FFA, 한국 제안에 대해 회기간 다시 논의하기로 하였고, 협력적 비회원(CNM) 해상 전제 참여 권리에 관해서는 CNM 작업반에 논의 하도록 위임하지 않기로 하였음

□ 협력적 비회원 지위

○ 논의내용 및 결과

- 8개의 협력적 비회원 지위 신청이 있었고 이들은 모두 '25년에 지위가 부여된 바 있음. '26년 지위 부여를 다루기 위한 작업반이 진행되었음
- FFA가 총회에 제안한 협력적 비회원 선박의 해상 전재 참여 금지에 대해서는 총회에서 작업반에 논의를 위임하지 않아 다루어지지 않았음
- 작업반에서 8개 신청 모두 수용할 것을 권고하였고 총회에서 승인되었음. 이들에게 '25년과 동일한 참여 권리가 승인되었음

【 '26년 협력적 비회원 참여 권리 】

협력적 비회원	'26년 참여 권리
바하마, 퀴라소, 라이베리아	운반선으로 전재 활동
에콰도르	협약수역이 아닌 해역에서 선망선 조업
엘살바도르	협약수역 내 공해에서 선망선 조업 29일
파나마	운반선과 병커선으로 전재 및 공급 활동(FAD 투척 금지)
태국, 베트남	운반선 및 병커선으로 전재 및 공급 활동

- 협력적 비회원들은 또한 FAD 회수만을 위한 선박을 등록할 수 있음
- EU는 운반선, 병커선의 FAD 투척 금지가 협력적 비회원들에게도 적용됨을 명시적으로 기록할 것을 요청하였음. 작업반 의장(TCC 부의장)은 FAD 작업반 권고 내용이 채택되면 모든 CCM들에게 적용되고 협력적 비회원들에게도 당연히 적용됨을 언급하였음

○ 에콰도르 선박의 기국 변경

- 파나마는 키리바시 EEZ에서 조업하던 에콰도르 선박 1척을 파나마로 국적 변경하여 계속 조업할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요청하였음
- 열대다랑어 조치(2023-01)에서는 SIDS 이외에는 선망선 어획노력 증가가 금지되어 있음이 제기되었고, 에콰도르는 선박 1척을 등록 삭제하므로 어획노력 증가는 아닌 것으로 확인하고 승인되었음
- PNA 회원들은 공해 조업이 아닌 EEZ 조업에 대해서는 위원회에서 승인할 일이 아님을 표명하였음

□ 바닷새

○ 논의배경 및 결과

- FFA는 작년에 이어 바닷새 조치를 강화하는 제안서를 제출하였고 일본은 최소기준과 기술적 사양을 구분하는 제안서를 제출하였음
- FFA와 일본은 제안서를 통합하였고 이견 없이 제안서 합의됨

구분	개정 내용
적용 범위	<p>남위 25도~남위 30도 해역에 대해 서경 175도 이서 해역은 남위 30도 이남 해역과 동일한 조치(보다 강력)를 요구하고 이동 해역은 기존과 같은 조치를 요구(발효: 2028.1.1)</p> <p>(남위 25도~남위 30도 및 서경 175도 이서 해역) CCM들은 이 해역 내 자국 연승선들에게 다음 중 하나를 하도록 요구해야 한다:</p> <p>a) 다음 3가지 조치 중 2가지 이상 실시 : i) 무게추; ii) 야간 투승; iii) 토리라인; 또는</p> <p>b) 낚시 보호 장치.</p> <p>(남위 25도~남위 30도 및 서경 175도 이동 해역) CCM들은 이 해역 내 자국 연승선들에게 다음 중 하나를 하도록 요구해야 한다:</p> <p>i) 무게추; ii) 토리라인; iii) 낚시 보호 장치.</p>
최소기준 및 기술적 지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토리라인 최소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박은 상공길이 100m 이상을 달성하기 위해 토리라인을 배치해야 한다. 이 상공길이를 달성하기 위해 토리라인 끝에 견인 물체가 부착되지 않은 경우 토리라인 최소길이는 200m이어야 한다. 견인 물체가 토리라인 끝에 부착된 경우 토리라인 최소길이는 120m이어야 한다. • 토리라인 기술적 지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비 토리라인과 손상된 토리라인을 수리하거나 교체하기 위한 스트리머가 선내 있어야 한다. 토리라인과 스트리머는 정기적으로 검사해야 하고 필요에 따라 유지 및 관리되어야 한다. 미끼 투척기를 사용할 때는 착륙 위치를 미리 조정해야 한다.

□ 상어 지느러미 절단 금지 면제

○ 논의배경

- 기술이행위원회(TCC)에서 상어 지느러미 절단 금지 면제 규정* 이행을 검증하기 어렵고 동 면제 규정을 삭제해야 한다는 주장이 계속 제기되었으나 일본, 중국, 대만은 삭제를 반대해 왔음

* 상어 지느러미 절단 금지(8항) 면제 허용: ① 몸통과 상응하는 지느러미가 같은 포대에 보관될 경우 ② 몸통과 상응하는 지느러미가 줄 또는 와이어로 연결되어 있을 경우 ③ 검색관이 쉽게 확인 가능하도록 몸통과 상응하는 지느러미가 태깅되어 있고 로그북에 보관 위치가 기록되어 있을 경우

- TCC 의장은 상어 지느러미 절단 금지 면제 규정의 효과성을 판단하기 위해 동 면제 규정을 사용하는 CCM들과 상어 지느러미 자연적 부착을 실시하는 CCM들을 구분하고 전자에 대해 면제 규정 이행에 관한 정보 제출 및 검토를 제안하였음

- 또한, 상어 어획 관련 정보가 현재 비공개 정보로 지정되어 지금까지 TCC에서 비공개 세션으로 논의하였고 NGO들에 의해 논의 투명성 문제가 제기되어 왔음. TCC 의장은 3가지 옵션*을 제시하였음

* 1) 계속해서 비공개 세션으로 논의 2) TCC 회원들의 결정으로 공개 세션에서 논의 3) 데이터를 공개로 재분류

○ 논의결과

- 제안이 합의되어 상어 조치 부록2 관련 부분 개정됨

- CCM들은 상어 지느러미 절단 금지 및 면제 조항 불이행 사례들이 확인될 경우 연례보고서 제2부에서 이를 보고해야 한다.
- CCM들은 대안적인 조치(면제)를 적용하여 어획된 상어 미수 및/또는 중량을 전체 상어 어획량과 함께 제공해야 한다.

- 논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3가지 옵션 중 옵션2에 대한 지지가 높아 매 TCC 회의에서 본 사안에 대해 공개 세션에서 논의할 것인 지 여부를 회원들이 결정하기로 하였음

□ 바다거북 조치 검토 과정

○ 논의배경

- '24년 총회에서 위원회는 '26년에 바다거북 조치(2018-04)를 검토하고 개정하기로 합의하였고, 미국은 '26년 이를 위한 회기간 과정을 수립하는 제안서를 제출하였음

○ 검토 목적

- 현재 조치는 천해에만 적용되어 협약수역 내 연승 어획 노력의 일부만 규율하고 있는바, 조치가 심해 연승 어업에도 확대 적용*하는 것을 고려
- * 미국은 장수거북에 미치는 심해 연승 어업의 영향을 우려하는 정보문서를 '24년 과학위에 제출하였음
- 조치 내 보고 요구사항들이 명확히 규정되도록 보장

○ 검토 과정

- 미국 주도로 회기간 비공식 작업반*을 수립하여 바다거북 부수어획 및 저감 조치에 관한 과학 정보를 검토
- * 1차 회의: '26년 1-2월 중, 2차 회의: '26년 4-5월 중

○ 검토 사항

- CMM 2018-04 내 보고 요구사항들이 명확히 규정되도록 보장
- 중서부 태평양 해역 내 바다거북 분포 범위, 번식 행태, 어업에 의한 영향 등에 관한 정보 제공
- 천해 및 심해 어업에서 바다거북 부수어획 현황을 평가
- 현재 WCPFC 심해 연승 어업 특성과 바다거북에 대한 영향을 저감할 수 있는 잠재적 조치들을 고려

○ 논의결과

- 미국 제안대로 합의되어 '26년에 미국 주도로 회기간 작업반을 진행하기로 하였음

□ 공해 승선검색 자발적 지침

○ 논의배경

- 공해 승선검색 검색관들의 사용을 위한 다국어 질문지 및 자발적 지침을 회기간 작업반에서 논의하였고 결과가 총회에 제출되었음

○ 주요내용

- (의무) 검색관들이 선장/선원에게 사용할 다국어 질문지
- (자발적 지침) DNA 샘플링 방법, 어획물 중량 추정법, 체장 측정, 부수어획 저감 조치 규격 측정, 사진 및 영상 증거 수집 및 취급

○ 논의결과

- 다국어 질문지와 자발적 지침을 작업반 논의결과대로 채택하였음
- 위원회는 26년에도 공해 승선검색 작업반(의장: 호주)을 유지하기로 하였고 작업반이 논의할 사항*을 부여하였음

* 선원 근로표준 조치(2024-04) 관련 검색 절차 개발, 바닷새 조치(2025-05) 개정사항 관련 지침 개정, 기타 필요사항

□ 기타 제안서

제안서 (제안 CCM)	논의 결과	주요내용
공해승선검색 (한국)	채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해 승선검색 우선순위 대상에 전자감시 시스템이 없는 선박 추가 - (기존) 옵서버 미승선 선박 - (개정) 옵서버 미승선 또는 '<u>작동하는 전자감시 시스템이 없는</u>' 선박
공해 어류군집장치(FAD) 금어기 및 어획물 보유 (한국)	채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획물 폐기 시 보고 규정 개정 - (기존) 폐기가 있을 경우 선박 운항자는 사무국장에 다음 정보를 48시간 이내 제출해야 한다. - (개정) 폐기가 있을 경우 기국 CCM은 선박 운항자가 기국 <u>CCM 당국 및/또는</u> 사무국장에 가능한 한 속히, 그러나 늦어도 <u>72시간 이내</u> 다음 정보를 제공하도록 해야 한다.

□ 전자보고 및 전자감시 작업반

○ 논의배경 및 결과

- 위원회는 전자보고(ER) 및 전자감시(EM) 작업반의 '26년 회기간 작업 계획*을 승인하였음

* EM 시스템 평가 및 인증 제도 수립, 현재 지역옵서버 프로그램 데이터 최소항목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EM 데이터 요구사항의 검토, 선상 EM 시스템 표준절차 개선 및 인접 RFMO들과의 조화 도모, WCPFC EM 제도 보존관리조치 초안 개발

□ IUU 선박목록

○ 논의배경 및 결과

- 기술이행위원회에서 뉴질랜드에 의해 인니 선박 3척이 IUU 선박목록에 등재 제안되었음. 인니는 총회에 선박의 제재에 대한 추가 정보를 제공할 것이 요청되었음

선명	기국	IMO 번호	신고 CCM	IUU 추정 활동
Bintang Bahagia 81	인도네시아	8456451	뉴질랜드	협약수역 내 무허가 조업
Bintang Bahagia 79	인도네시아	8569337	뉴질랜드	협약수역 내 무허가 조업
Marceljaya- 26	인도네시아	8569337	뉴질랜드	협약수역 내 무허가 조업

- 인니는 3척의 선박이 자국 EEZ 내 가다랑어 조업이 허가된 선박들이라고 하였고, 합산 약 USD 28,000의 제재금이 부과·납부되었다고 하였음
- 인니의 보다 실효적인 조치와 성실한 정보 제공이 필요했다는 의견이 있었고 위원회는 인니 선박 3척을 초안에서 삭제하기로 하였음
- IUU 선박목록에 등재되어 있는 기존 4척은 계속 등재 유지하기로 함

선명	기국	등재일자	신고 CCM	IUU 추정 활동
Neptune	불명	2010.12.10	프랑스	협약수역 내 무허가 조업
Fu Lien No 1	불명	2010.12.10	미국	무국적으로 협약수역 내 무허가 조업
Yu Fong 168	불명	2009.12.11	마셜	마셜 EEZ 내 무허가 조업
Kuda Laut 03	필리핀	2023.12.08	뉴질랜드	협약수역 내 무허가 조업

□ 재정·행정 사항

○ 회의 참석 지원

- FFA는 작년 총회에서 '25년에 한해 잠정적으로 취한 개도국 대표자 회의 참석 지원에 관한 결정*을 이후에도 계속할 것을 제안하였음

* 각 개도국 대표자 2명의 위원회 회의 참석경비를 비SIDS 회원들이 분담금 비율에 따라 부담

- 한국은 총회 및 하부위원회 의장의 주재하는 회의 참석 경비를 위원회에서 지원할 것을 제안하였음

- FFA 제안과 한국 제안이 하나의 패키지로 처리되어 합의됨

→ 개발된 회원 출신 의장의 주재하는 회의 참석 경비를 협력적 비회원 기금에서 '29년까지 지원하고 개도국 대표자 회의 참석 지원에 관한 결정을 '29년까지 계속 적용

○ 위원회 예산 및 분담금

- 향후 연도 위원회 예산(안)

구분	2025년 (승인)	2026년 (승인)	2027년 (잠정)	2028년 (잠정)
예산	USD 9,783,471 (약 140억원)	USD 10,305,543 (약 147.5억원)	USD 10,440,925 (약 149.4억원)	USD 10,057,679 (약 143.9억원)

- 한국 분담금

구분	2025년	2026년	전년비
한국 분담금	USD 1,180,098 (약 17억원)	USD 1,268,674 (약 18.28억원)	약 7.5% 증가

* 분담금 산정 공식: 기본금(10%) + 회원 경제수준(20%) + 어획수준(70%)

** 주요 회원 '26년 분담금 : 일본 17.78억원, 대만 16.54억원, 미국 11.99억원, 키리바시 10.06억원, 마이크로네시아 8.93억원, EU 6.36억원

□ 기타

○ 차기 의장단

구분	의장 소속 회원
총회 의장	니우에
총회 부의장	일본
기술이행위원회 의장	대한민국
기술이행위원회 부의장	파푸아뉴기니
과학위원회 의장	미국
과학위원회 부의장	호주
재정행정위원회 공동의장	인도네시아, 미크로네시아
북방위원회 의장	일본
북방위원회 부의장	미정
전자보고 및 전자감시 작업반 의장	미국
남방 날개다랑어 공동작업반 공동의장	호주
항만국 조치 작업반 의장	피지

○ '26년 위원회 및 하부위원회 주요 회의 일정

구분	일시 / 장소
태평양 참다랑어 회기간 공동작업반	3.11~13 / 미국 캘리포니아
제11차 WCPFC-IATTC 태평양 참다랑어 공동작업반 및 제22차 북방위원회	7.8~14 / 일본 나가사키
제22차 과학위원회	8.11~19 / 사모아 아피아
제22차 기술이행위원회	9.23~29 / 미크로네시아 폰페이
제23차 연례회의	11.29~12.4 / 미정

○ '26년 주요 작업반 회의 일정

시기	형태	회의명	논의내용
4월	화상	WCPFC-IATTC 남방 날개다랑어 공동작업반	두 기구 간 남방 날개다랑어 공동 관리 논의 시작
5월	대면 (뉴지)	남방 날개다랑어 이행 워크숍	남방 날개다랑어 이행 조치(할당 등) 논의
5월	화상	눈다랑어 관리절차 워크숍	과학위에 제공할 눈다랑어 관리절차 후보(CMP) 개발 지침
9월	대면 (FSM)	제22차 기술이행위원회 및 남방 날개다랑어 이행 워크숍	남방 날개다랑어 이행 조치 논의 계속
9월	대면 (미정)	눈다랑어 관리절차 워크숍	눈다랑어 CMP 개선 및 총회에 제공할 권고 마련
11월	화상	눈다랑어 워크숍 및 (필요시) 남방 날개다랑어 워크숍	총회 전 논의 계속